

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5. 28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'97. 5. 28

다. 상 정 일 자 : '97. 6. 23 (제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·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 안 설 명 자 : 건설과장 송기채

나. 폐 지 사 유

-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제13조 토지의 가격평정이 농어촌 정비법 제52조 규정에 동 조례 제14조가 동법 제51조에 규정하고 있는 등 같은 내용이 동법시행령을 포함하여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례의 특별한 의미가 없음.

다. 주요내용

-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임근성)

- 동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 론 요 지

" 생 략 "

6. 심 사 결 과

「원안가결」

7. 첨 부 :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97-7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5. 28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-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의 주요내용이 농어촌정비법(법제46조, 제50조, 제51조)에 규정되어 있어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

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